

지방채발행계획승인 (안)

【금촌역~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】

의 안 번 호	222
--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6. 11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지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금촌역~순달교간 도로
개설공사에 따른 '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(안) 을 별첨과 같이
심의 의결 요구함

2. 주요골자

- 자유로 개통 및 일산 신도시개발로 인한 금촌시가지내 교통
체증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18,000백만원중 4,000백만원을
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용하고자 함
- 기채규모 : 4,000백만원 (도비 2,000 시비 2,000)
- 기 채 선 : 경기도
- 자금종류 : 지역개발기금
- 발행시기 : '97. 10월
- 발행조건 :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(년리 8%)

금촌역~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계획

□ 사업의 필요성

- 일산신도시 및 자유로 개통으로 인하여 금촌중심 시가지내로 통과하는 차량의 급증으로 상시 교통체증 유발
- 금촌시가지내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파주시 금촌동 일원(금촌역~순달교간)
- 기 간 : '95. 4 ~ '99. 12
- 사업량 : L = 0.63km B = 25m
- 사업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공 종 별	사 업 량	투 자 계 획						
		합 계	기투자	'97계획				'98이후 계 획
				계	지역개발 기 금	도 비	시 비	
계		18,000	11,700	4,000	4,000			2,300
보 상 비	1식	10,000	10,000					
공 사 비	L=630m	7,880	1,600	3,980	3,980			2,300
부 대 비	1식	120	100	20	20			

□ 사업의 타당성 검토사항

○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여론

-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기사업 완료 요망

○ 각종 인허가 및 법적절차 이행사항

-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(도로 : 대로 3류 5호선) 로 결정

○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검토

- 관련성 없음

○ 도농복합 형태의 파주시 승격에 따른 도시기본시설확충 극대화

□ 추진상황

○ '94. 12. 30 : 실시설계용역 완료

○ '95. 7 10 :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

○ '96. 11현재 : 용지보상 추진중

□ 기대효과

○ 금촌도시개발 촉진

○ 금촌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주민숙원 해소